



## 연 구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사업명 :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 과제번호 : 2019S1A5A2A03034583

○ 연구과제명 : Hypoxia 환경 및 운동 트레이닝이 운동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변인의 개선에 대한 상호 작용 기전 및 효용성 규명

○ 사업비 (당해년도:1차년도)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85,000	88,000	88,000			261,000
기 타						
계	85,000	88,000	88,000			261,000

○ 총 연구기간

2019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협약당사자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주관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1번지)

(주관연구책임자) 박훈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참여연구원) 임기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참여연구원) 정소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참여연구원) 남상석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

(참여연구원) 김지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과제의 목표 및 내용)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2조(연구과제의 수행)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계획서에 따라 참여연구원과 함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본 계약상의 주관연구책임자 및/또는 참여연구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행정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감독권 행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전문기관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사업비를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하며,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에 재투자하거나 그 밖에 전문기관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항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또한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중간보고)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결과보고) ①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은 사업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4. 연구성과 및 연구결과물 등의 정보입력

②전문기관은 기제출한 정산결과 등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에게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결과물 미제출) ①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은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재 해지시점은 전문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③단,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충분히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본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로 취득하는 연구기반 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 ·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전문기관은 연구결과가 국가 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교육부(정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성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전문기관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 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과 참여연구원은 본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 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성과의 공개 · 이용 및 활용에 대해 전문기관에게 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기관은 공개 · 이용 및 활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협약의 변경)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 중단 시점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과제수행이 지연되어 목표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 전문기관은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영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사업의 소관법령 및 처리규정, 사업별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중지 및 회수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처리규정 제25조제6항 각호에 따른다)
3. 학술활동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5년
4. 연구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의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서 제출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부가조건)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지원대상자(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가 대학 자체감사 또는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①항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학술지원대상자(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를 즉시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제17조 (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전문기관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2019년 07월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주관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건국대학교

직급(위) : 조교수

성명 : 박훈영

별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